

2025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공고

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은 규제특례를 받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융합 제품·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지원하여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「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」을 공모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년 3월 21일
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

1. 사업개요

지원대상	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,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서울시 중소기업 중 사업개시를 완료한 기업
지원분야	AI, 바이오헬스, 핀테크, 로봇, 스마트 모빌리티 등 신산업분야
지원규모	기업당 최대 5천만원 이내(기업부담금: 서울시지원금의 10% 이상 현금부담)
지원기간	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
지원내용	- 규제샌드박스 제품·서비스에 대한 시험, 검사, 인허가, 보험료 등 실증 비용 - 제품·서비스 시장출시 및 홍보를 위한 광고 등 마케팅 비용 등

□ 신청자격: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-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 등이 서울시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산업통상자원부, 금융위원회, 국토교통부 등에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사업개시를 완료하여 추진중인 기업
-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□ 지원 제외 대상

-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인 경우
- 국세, 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경우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
-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2. 추진절차 및 선정평가

□ 추진절차



□ 선정방법

- 서류검토: 자격요건 충족 여부, 필수서류 제출 여부, 증빙서류 적정성 검토 등
- 선정평가: 분야별 외부 전문가 7인 이상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발표평가 실시 예정

□ 평가기준

- 평가지표 및 배점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
혁신성	• 기존 기술, 제품,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가?	20
지원필요성	•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규제인가?	10
	• 서울시 산업 환경 및 비전 등에 적합한가?	10
	•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, 근거가 타당한가?	10
사업화 가능성	• 실증계획이 적절하고 완료될 수 있는가?	20
	• 실증 후 제품, 서비스가 확산 및 보급화 될 수 있는가?	10
	• 목표시장이 적정하고, 지속가능한 사업아이템인가?	10
사업비 적정성	• 사업비 구성 등의 계획이 적정한가?	10

- 가산점 부여 기준

- 가산점 부여 방법: 종합평점에 항목별 1점 가점(서울기업지원센터 지원기업 3점)
- 가산점 부여 항목: 벤처기업, 기술혁신형기업, 경영혁신형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, 하이서울기업, SBA 투자기업, 서울테크밋업 회원사, CES 혁신상 수상기업, 서울기업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(3점)
- 가산점 부여 범위: 종합평점(100점) 범위 내에서 부여하며, 최대 5점까지 인정

3. 협약체결 및 사업비

□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

- 협약기간: 2025. 5. ~ 2025. 10.(6개월 이내)
-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약대상 선정
-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서울경제진흥원과 협약체결
-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지원기업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

□ 사업비 사용항목

비목	편성기준	계상비율
실증비용	○ 외부인건비(최대 1,500만원 이내 계상) ○ 전문가활용비(최대 500만원 이내 계상)* ○ 시설·장비 구입 및 임차료, 재료비, 시험·평가비 등 ○ 책임보험료(최대 1,000만원 이내 계상)	사업비의 70% 이상
마케팅비용	○ 광고선전비, 전시회참가비 등	-
기타비용	○ 회계감사수수료,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수수료 등	-

* 실증 사업 관련 법적·기술적 검토는 진흥원 내부의 '규제개혁 심화 컨설팅' 활용 가능

□ 사업비 지원제외 항목

- 사업비 편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
- 지원기업의 단순 운영경비, 제품·서비스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간접비용, 소속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

지원불가 항목 예시	▪ 회의비, 다과비, 식대, 유흥성 경비 ▪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▪ 복리후생비성 경비, 후원비성 경비, 간접비성 경비 ▪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 ▪ 지원기업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 구매 ▪ 부가가치세, 관세 등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 ▪ 기타 범칙금, 출장비, 항공료, 지원기업 소속직원 인건비 ▪ 전자(세금)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▪ 운영지침 및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항목
---------------	--

4. 신청방법

□ 접수기간: 2025. 3. 21.(금) ~ 4. 14.(월) 17:00까지

□ 신청방법: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sba.seoul.kr>) ⇨ 사업신청(접수중인 사업) ⇨ 사업명 ⇨ 신청양식 등 다운로드 후 작성 ⇨ 신청하기 ⇨ 내용 작성 후 제출서류 첨부(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)

□ 제출서류

표준서식	기타서류
① 지원 신청서 1부	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, 실증특례 신청서류 1부 (중앙부처 제출서류)
②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사용계획서 1부	② 규제샌드박스 승인 확인서 1부
③ 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	③ 최근 3개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1부
④ 약약서 1부	④ 최근 3개월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
⑤ 청렴이행각서 1부	⑤ 가산점 등 기타 증빙서류 각 1부

5. 기타사항

□ 유의사항

○ 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사업비 집행 불가

※ 예시) 중앙정부 예산으로 집행된 동일한 시제품 제작비는 동 지원사업의 사업비로 집행 불가
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○ 제출된 서류가 허위, 위·변조 또는 대리작성, 명의도용 등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,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등 제재할 수 있음

○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선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일정기간을 두고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
○ 보완서류 요청 및 평가일정 등은 신청 기업 대표자의 이메일주소로 개별 통지하며, 이메일주소 등 연락처 오기에 따라 미확인·착오로 인한 보완서류 미제출,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

○ 서울경제진흥원으로부터 동일과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, 중복성 검토 등을 통해 선정 제외 또는 선정취소 될 수 있음

□ 문의처: 규제해소지원팀 ☎ 02-2222-3763, yellow@sba.seoul.kr